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에 대한 국유재산특례 근거 신설〉

■ 송재봉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에 대한 국유재산특례 근거 신설 (안 별표 제219호)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송재봉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4. 6. 18.

다. 회 부 일 : 2024. 6.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사광가속기는 방사광 방출을 위하여 전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회전하게 하는 가속 장치, 방사광을 활용하는 빔라인 장치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하는데, 물질의 내부구조와 성분을 분석할 수 있어 기초 과학에서부터 신소재 개발이나 반도체 개발, 유전공학, 신약 개발 등 응용과학에 이르기까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치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를 맞아 과학기술분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방사광가속기를 비롯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환경을 두텁게 마련하는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대형가속기 운영기관, 연구기관 등의 국유재산 사용이나 장기 사용허가 등에 대하여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재봉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5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I. 검토의견

1.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에 대한 국유재산특례 근거 신설 (안 별표 제219호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에 대한 장기 사용허가등의 특례 근거 신설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¹⁾는 이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서만 국유재산특례의 신설 및 운용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다른 법률의 개정”을 통한 [별표]의 개정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 따라서 개별법상의 국유재산특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함께 개정하여야 함.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5조 및 제6조²⁾는 국유재산특례의 신설 요건으로 ① 특례목적의 공익에 부합여부, ② 예산지원 등 다른 수단에

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 ①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③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 별표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별표에 따른다.

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5조(국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 국가는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국유재산특례를 신설 또는 변경하거나 운용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국유재산특례의 운용이 국가 전체의 이익에 부합할 것

2. 국유재산특례가 예산 지원, 현물출자나 그 밖의 다른 방법보다 특례 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방법으로서 적절할 것

3. 국유재산특례의 목적, 적용대상 및 적용요건을 법률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할 것

4. 국유재산특례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 운용될 것

제6조(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에 관한 심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국유재산특례를 신설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유재산특례 신설 등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이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비해 효과적인지 여부, ③ 특례요건의 명확성과 구체성, ④ 존속기간의 적절성을 제시하고 있음. 이는 무분별한 특례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관리와 국가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기준에 따라 신설 국유재산특례의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송재봉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_2200574호)에 따라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대부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사용·수익료 및 대부료의 산정기준을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로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은 대형가속기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대형가속기 운영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을 말함³⁾.

3)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형가속기”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의 가속기(입자 등을 빛의 속도에 가깝게 빠른 속도로 가속시키는 장치, 빔라인, 실험장치 및 부대시설로서 방사광가속기, 양성자가속기, 중이온가속기 또는 중입자가속기를 말한다)로서 국가가 구축·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대형가속기 구축사업”이란 대형가속기의 설치를 위하여 이를 설계·제작·건설하는 등 일련의 사업을 말한다.
3. “대형가속기 지원사업”이란 대형가속기의 기술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저변 확대 및 이용자의 연구활동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대형가속기 운영 사업
 - 나. 대형가속기 빔라인 및 관련시설을 활용하여 연구성과를 창출하는 사업
 - 다. 대형가속기를 활용하는 연구자 및 산업체 지원사업
 -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업
4.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이란 대형가속기를 구축·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 가. 대형가속기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 나. 대형가속기 운영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 제5조 각호에 정한 기준에 따라 특례인정 필요성을 살펴보면,

첫째, 개정안은 대형가속기 관련 기술을 발전시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에 대하여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대규모의 시설이 요구되는 대형가속기 운영에 있어 국유재산 사용이 불가피하고 장기적인 실험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례 신설의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음.

[대형가속기 운영 현황]

구분	위치	운영주체	국유재산 사용 여부	활용 목적
방사광 가속기 3세대	경북 포항시	포항공대	○	기초·원천연구 및 산업연구
방사광 가속기 4세대	경북 포항시	포항공대	○	생명공학, 신약, 신물질 개발 등
방사광 가속기 다목적	충북 청주시	기초과학 지원연구원	×	기초·원천연구 및 산업연구
양성자 가속기	경북 경주시	원자력 연구원	×	동위원소 생산, 방사선 영향평가 및 산업연구
중이온 가속기	대전시 유성구	기초과학 연구원	○	우주진화규명 등 기초연구
중입자 가속기	부산 기장군	서울대학교 병원	×	암치료 등 의학분야 활용

자료: 기획재정부

둘째,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대형가속기 운영기관’에 대하여 국유재산 사용·수익·대부에 관한 특례 뿐만 아니라 출연도 규정⁴⁾하고 있는 바,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하지 않을 경우 국

4)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5조(출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원활한

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이 국유재산 임대료로 지출되는 불필요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유재산특례가 다른 방법에 비해 효과적인 지원 수단이 될 것으로 보임.

셋째,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국유재산특례의 대상을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으로 한정하면서 이를 대형가속기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기관과 대형가속기 운영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확성과 구체성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넷째, 개정안은 2032년 12월 31일까지로 특례의 존속기한이 설정되어 있는 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 개정 시 존속기한 설정 원칙⁵⁾을 감안하여 존속기한의 적절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한편,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제8조에서도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국유재산특례 근거법률에 제8조 또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아울러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인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_2200574)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할 것임.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 사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대형가속기 운영 기관등에 출연할 수 있다.

5) 사용료 감면: 5년 / 양여·장기사용 허가: 8년

동 개정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형가속기 구축을 지원하려는 것이므로 특례 목적의 공익성이 인정되고 가속기 운영기간이 장기인 점을 고려할 때, 국유재산특례 신설이 예산 등 다른 지원수단보다 적절하다는 점에서 개정이 필요하며 특례 존속기한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 개정 시 존속기한 설정 원칙에 따라 해당 법안의 존속기한은 8년이 적절하다는 입장임.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제2200574호)

제11조(국유·공유재산의 사용·수익·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유·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에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유·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국유·공유재산의 사용·수익료 및 대부료의 산정기준은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제1항에 따라 국유·공유재산을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에 매각할 때에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별표			
< 신설 >	연번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	특례유형	존속기한
	219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등	2032. 12. 31.

문의처

02)6788-5150